

#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(마급)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(마급)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응모하시기 바랍니다.

2017. 3. .

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| 채용분야                    | 채용예정<br>직<br>급       | 채용<br>인원 | 계약기간            | 담당업무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문성글로벨<br>인재학당<br>관리운영담당 | 시간선택제<br>임기제<br>“마”급 | 1명       | 최초 임용일<br>부터 1년 | ◦ 프로그램 강사 및 시설 관리<br>◦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<br>◦ 아동 및 학부모 상담 |

※ 임용포기,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

## 2. 응시자격

### □ 기본자격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공고일 현재,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- 아동교육 또는 영어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 운영관리 또는 상담업무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
## □ 우대자격

- 공고일 현재, 주민등록상 금천구 거주자
- 교육관련 자격증(교사, 평생교육사,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, TESOL 등) 소지자
- 전산 자격증(워드, 컴퓨터 활용 등) 소지자

### ※ 응시결격 사유 (지방공무원법 제31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3. 보수수준

- 가.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채용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지급함
- 시간선택제임기제 “마”급-연14,655천원(기본급 기준, 9급 1호봉 수준)
- 나. 연봉외 수당은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(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초과근무 등)

## 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7. 3. 31.(금) ~ 4. 4.(화), 09:00~18:00
- 접수장소 :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(10층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·FAX 접수 불가, 대리접수 가능)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## 나. 시험일정(예정)

- 1차(서류전형) : 2017. 4. 5.(수)
  - ※ 합격자 발표: 2017. 4. 6.(목) ※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
- 2차(면접시험) : 2017. 4. 10.(월)
  - ※ 합격자 발표 : 2017. 4. 11.(화) ※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
  - ※ 면접시간 및 장소는 금천구청 누리집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유선통보)

## 다. 시험방법

- 1차 시험(서류전형)
  - 채용예정 직위의 응시자격, 서류 진위 및 경력 인정 여부 등 심사
  -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점수제에 의한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
- 2차시험( 면접시험)
  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 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.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면접합격자 발표 :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
  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 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## 5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 1부 (사진 및 5,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)
  - ※ 수입증지 : 금천구청 1층 민원여권과
- 나. 이력서(사진부착) 1부
- 다. 자기소개서 (A4용지 1~2매 정도)
- 라.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- 마. 경력(재직)증명서(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) 1부.
- 바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

## 6. 복무관련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구 분  | .시간선택제임기제 “마”급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기간 | .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시간 | .주당 35시간 월~금(10:00~18:00)               |
| 복무기준 | .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복무 조례」 준용 |

## 7. 유의사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다.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『국민연금법』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라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바.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, 응시표,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

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사.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,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금천구 교육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아. 응시원서 접수결과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,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
자.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(☎02-2627-28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